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148
----------	-------

발의연월일 : 2017. 11. 13.

발의자 : 박정·권칠승·유동수

이채익·김경수·윤한홍

김종훈·홍의락·김기선

김수민·신경민·홍익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기반 조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하는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대하여 폐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례가 비일비재함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조정 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수단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중소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유형화하고, 중소기업이 해당 침해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될 경우 시정권

고·공표·명령 등의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34조 및 제35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이하 “기술침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截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중소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중소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제32조 또는 계약관계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중소기업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중소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또는 그 유출한 중소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라. 중소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중소기업기술에 대하여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제3장의 제목 중 “중소기업기술”을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으로 한다.

제3장에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술침해의 신고 및 조사) ① 제2조제3호의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등은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중소기업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술침해 신고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사전조정을 거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기술침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조의3(기술침해에 관한 권고 및 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기술침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라 신고한 중소기업등이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중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고·공표 및 명령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에 따른 권고나 명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과태료) ①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침해의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제8조

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이하 “기술침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가. 절취(截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중소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중소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p> <p>나. 제32조 또는 계약관계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중소기업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등”이라</p>

제3장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신 설>

한다)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중소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또는 그 유출한 중소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라. 중소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중소기업기술에 대하여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제3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제8조의2(기술침해의 신고 및 조사) ① 제2조제3호의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등은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

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중소기업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술침해 신고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사전조정을 거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기술침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신 설>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조의3(기술침해에 관한 권고 및 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기술침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라 신고한 중소기업 등이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중재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 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

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고·공표 및 명령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4(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에 따른 권고나 명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별 칙) <신 설>

제34조(별 칙) ① 제8조의3제4항에

	<p><u>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u></p> <p><u>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u></p> <p><u>제35조(과태료) ① 제8조의2제4항 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 수한다.</u></p>
--	---